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1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NH투자증권㈜

2. 조치내용

가.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(처분금지 위반)

○ NH투자증권㈜ : 과태료 20백만원 부과

나.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

○ NH투자증권㈜ : 과태료 24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(처분금지 위반)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,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◦ 회사는 A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xxxx.xx.x.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○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, 이 중 ○주를 상장일인 xxxx.xx.xx.로부터 30일 이내인 xxxx.x.xx.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

2.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◦ 회사는 xxxx.x.x.부터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지수 개발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였으나, 해당 사실을 업무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인 xxxx.x.xx.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41조 제1항 및 제71조 제7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4호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9조 제5호 등